

반국가행위조항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칙에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4·19 이후 민주당정권하에서의 학생, 언론인, 교사, 정당인 등에 의한 혁신운동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89~195쪽).

다음은 혁명검찰부가 처리한 사건의 '죄명별 직업별 통계'와 '죄명별 구형형기별 통계'이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5집, 1962, 786쪽 이하;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28~29쪽).

혁명검찰부가 위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사람은 공소제기 713명, 기소유예 180명, 무혐의처리 171명 등이었다. 그 중 특수반국가행위죄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사람이 191명(혁명검찰부에 입건된 사람은 8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의 설치목적,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중요한 활동목표 가운데 하나가 혁신세력의 제거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별 통계의 특수반국가행위조항 적용자에 정당, 사회단체 관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혁명검찰부의 구형통계를 보면 특수반국가행위에 대하여 가장 엄중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하 구형량이 징역 5년이며 사형구형자도 16명으로 가장 많다. 그 가운데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박원순, 앞의 책 제2권, 28쪽).

## 2) 중앙정보부와 ‘반공법’

중장정보부법은 1961년 6월 10일, 반공법은 같은 해 7월 3일 군사쿠데타세력이 민정이양의 형식을 취하기 직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하여 각각 제정되었다. 이 두 법은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규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한편 박정희정권은 이러한 수단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계엄령, 위수령,

### 역대정권이 한 긴급권 행사내역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
계엄령	1	-	4
위수령	-	-	2
비상사태	-	-	1
긴급조치	-	-	5(9)
계	1	-	11

비상사태 선포 또는 긴급조치 등 각종 초법적 긴급권 행사를 통해 무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다음은 '역대정권이 한 긴급권 행사내역'과 '1961~1980년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검거된 인원수'이다(강민, 「한국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한국정치발전의 특성과 전망』, 한  
국정치학회, 1984, 21쪽 및 김영래, 「한국이의집단에 대한 조합주의적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6, 78쪽;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30~31쪽).

이 수치의 근거와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아래 도표에서 알아내

1961~1980년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걸거된 인원수

	국가 보안법	반공법	정치 활동	사회 안전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 하의범죄 처벌에 관한특별 조치법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긴급 조치 제9호	계
1961	296					1			297
1962				3,038					3,038
1963	102	86			239				427
1964	29	79			18				126
1965	37	84			98	3			222
1966	44	104			7	2			157
1967	44	110			4	6			164
1968	83	168			37	1			289
1969	81	323			27	1			432
1970	204	368			25				597
1971	217	276			49				543
1972	175	507			24	1			706
1973	164	260			37				461
1974	152	228			7				87
1975	74	328			5	13			420
1976	121	386			9	29			738
1977	35	322			1				157
1978	30	208			3	6			515
1979	57	199			1	2			11
1980	23	136	811		3				215
계	1,968	4,167	3,849	19	625	15	15	726	11,384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전기간을 통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꾸준히 적용되어왔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 이 기간중에 국가보안법보다는 반공법이 훨씬 더 애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체로 보면 반공법 적용인원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인원보다 약 4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반공법 제4조(고무·찬양)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신시기에는 다른 기간보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선포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1974년의 제1호, 제4호 및 1975년 4월의 제7호에 이어 같은 해 5월에 선포되어 1979년 12월에 해제된 초현법적 조치였다. 그 내용은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치는 조치 자체에 대한 비방조차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반공법과 긴급조치 제9호의 대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공법의 남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시간이 갈수록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가 대체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회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다음의 1964~1979년 및 1980~1991년 사법연감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969년 삼선개혁, 1971년 제7대 대선, 1987년 6월항쟁 및 7·8월노동자대투쟁 등을 전후한 시기에 적용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박원순, 앞의 책 제2편, 32~33쪽; 이진복, 앞의 책, 194쪽).

####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국가보안법·반공법 재판인원수

(단위: 명, 1964~69년도 사건수)

연도	19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국보	51	60	66	64	102	104	301	320	310	249	216	134	166	62	51	75
반공	92	101	125	136	200	406	462	411	651	407	314	415	462	381	303	265
계	143	161	191	200	302	510	863	731	961	656	530	549	628	443	354	340

\* 법원행정처, 1964~1979년『사법연감』에서 발췌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사무보고서에 의하면 1967년부터 197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처리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은 476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결과는 다음과 같다(최대현, 「북괴의 대중동원 공작전술과 이에 관련된 반국가사법 재판결과 분석고찰」, 대검찰청, 『검찰』 1971년 12월호, 46쪽 이하).

#### 위 재판결과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면소, 형면제	가정법원송치	무죄	계
인원	250	193	10	5	2	16	476
%	52.5	40.5	2.1	1.1	0.4	3.4	100

이들 중 반공법 위반사범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보다 2배 이상이며, 반공법 위반사범 중 제4조(고무·찬양·동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160명으로 동 법 위반사범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반공법 제4조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1, 2심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최대현, 위의 글).

#### 반공법 제4조 위반혐의자들의 1, 2심 판결결과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면소, 형면제	가정법원송치	무죄	계
1심	67	86	3	-	2	2	160
인원 (%)	41.9	53.8	1.9	-	1.2	1.2	100
항소심	26	47	2	-	-	-	75
인원 (%)	34.67	62.67	2.67	-	-	-	100
항소 후	53	100	3	-	2	2	160
집계 (%)	33.1	62.5	2.0	-	1.2	1.2	100

다음의 형사공판 처리인원수를 도표 등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운용의 잔혹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사형·무기형 선고율보다 국가보안법의 그것이 전체 평균보다 많게는 300배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체평균은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임에 반하여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증감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안법의 무죄율이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반공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욱 높다). 그러나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장시간 수사와 고문수사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조작 기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적 위기해소를 위하여 반대자 등을 무리하게 구속하여 격리 감금하고 그 수사내용을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미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곤 하였던 것이다.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가 발효되고 곧이어 5월에 이른바 인혁당사건이 발생하여 국가보안법 운용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들 중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형이 집행되었으며 3명은 옥중에서, 혹은 출옥 후 옥중에서 얻은 지병으로 사망하였다(제임스 시노트, 「인혁당사건을 증언한다」, 『사회와 사상』 1989년 6월호, 236~237쪽). 이들은 모두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비상군법회의는 설치 9개월 동안 203명의 1심, 항소심을 처리했다(『한국일보』 1974년 10월 12일자).

#### 제1십 형사공판 전체사건과 국가보안법사건 처리 인원수를 비교

(단위 :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사형선고율	전체	0.04	0.05	0.03	0.02	0.03	0.03	0.03	0.01	0.02	0.02
	국보	3.54	5.95	5.78	1.08	4.49	8.99	3.60	2.44	-	2.44
	반공	-	4.80	0.20	0.62	0.44	-	-	0.70	-	0.94
무기선고율	전체	0.05	0.05	0.06	0.04	0.06	0.05	0.05	0.06	0.07	0.07
	국보	2.02	5.41	2.67	4.32	4.49	4.49	2.16	2.44	-	4.88
	반공	-	-	0.60	0.62	0.88	0.29	-	1.05	-	1.41
무죄선고율	전체	0.88	0.62	0.51	0.55	0.42	0.32	0.39	0.48	0.50	0.46
	국보	5.05	0.54	-	2.16	1.28	1.12	-	-	3.03	-
	반공	7.96	7.01	0.99	2.18	2.64	2.06	1.24	0.35	0.43	0.47
집유선고율	전체	-	-	-	-	43.25	43.23	42.97	43.39	44.03	
	국보	40.90	32.97	30.22	24.32	12.82	19.10	12.23	31.71	12.12	9.76
	반공	37.24	40.22	47.42	42.68	31.28	26.55	22.83	26.92	22.84	25.35

\* 1970~1979년 『사법연감』에서 발췌

사형 : 도예종, 서도원, 우홍선, 하재완, 송상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무기징역 :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이성재, 유진곤

징역20년 : 김종대, 정만진, 조만호, 이재형

징역15년 : 이창복, 황현승, 임구호, 전재권

징역 5년 : 장석구

국가보안법 운용의 잔혹함은 수사과정에서도 보인다. 국가보안법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영장없는 강제연행 및 압수수색, 장기구금, 고문, 피의사실공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다. 1980년대의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들은 예외없이 이러한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1981년의 전민학련·전민노련사건과 부림사건, 1982년의 부산미문화원사건, 1985년의 민청련사건, 1986년의 건국대사건과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다(『한겨레신문』 1988년 9~12월 '진상, 한국의 정치 사건' 기획기사 및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참조).

장기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특히 특수수사기관의 활동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고문 등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신청을 거부하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1992년 8월에서 9월까지 사이에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 불허와 관련하여 고발된 사건만도 3건(김낙중사건의 변호인 및 가족접견 거부, 최호경과 김표무사건에 대한 가족접견 거부, 법무부,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이나 된다. 다음의 표들은 경찰청(치안본부) 대공분실, 국가안전기획부, 기무사(보안사) 등의 국가보안법사건 관련통계이다.

####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1980~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취급인원수

	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간첩혐의자	395	40	21	14	2	6	45	156	99
국보위반혐의자	11	-	1	4	2	2	1	-	1
전체국보입건자	384	40	20	10	-	4	44	156	98
국보위반혐의자	2,232	167	270	234	121	106	127	527	489

\* 내무부,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436쪽 및 684쪽에서 발췌

#### 수사기관별 최초 사건인지 건수

	1988	1989	1990	1991	1992. 1~9	합계
안기부	12	81	124	82	76	375
경찰	226	597	541	456	261	2,081
검찰		7		1	1	9

\* 법무부,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안기부,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검찰에 송치한 국가보안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접수인원	처리내역		미제
안 기 부	1988 1989 1990 1991 1992.1~9		기소	불기소	
	19	13	6	-	
	97	74	23	-	
	136	87	49	-	
	107	68	39	-	
	계	103	58	5	40
대공	1988~1992.9	462	300	122	40
대공	1988~1992.9	2,193	1,311	851	31

\* 법무부,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1989년 이후 국가보안법사건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사건

접수일자	사건번호	사건요지	처리내역
1989.7.12	89보1	김준기사건, 주명수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89.7.20	89보2	서경원사건, 홍영기변호사, 서울구치소	취하
1989.8.3	89보3	문부식사건, 김동현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89.8.5	89보4	서경원사건, 강철선변호사 외, 서울지검	취소결정
1989.8.14	89보5	홍성담사건, 윤종현변호사 외, 안기부	홍성담인용, 차일환기각
1989.9.1	89보6	임수경사건, 황인철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89.9.4	89보7	김현장사건, 황인철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91.3.15	91보1	박기평사건, 유선호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91.4.13	91보2	박형기사건, 김한주변호사 외, 치안본부	취소결정
1992.9.1	92보4	김낙중사건, 박성민변호사 외, 안기부	김낙중 외 3명만 인용
1992.9.3	92보5	김낙중사건, 임종인변호사, 안기부	김낙중 외 3명만 인용
1992.9.23	92보6	최호경사건, 박성호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92.9.30	92보7	장기표사건, 윤종현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92.10.1	92보8	황인오사건, 김제완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92.10.6	92보9	손병선사건, 임종인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 대법원,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1992년 10월 10일 현재, 서울형사지법)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로 인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 중 국가보안법관련사건

사건번호	사건요지	진행경과
92다19767	김한주변호사의 피의자 박형기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치안본부대공2부에서 거부	서울민사지법, 원고 일부승소 서울민사지법항소부, 항소기각대법원, 계속중
89나50586	박종철이 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민사지법,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계속중
92나14764	김근태가 서울중부서에서 고문당한 사건	서울민사지법,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계속중
92가합 49346	강동규 외 147명이 민간인으로서 보안 사의 사찰을 받은 사건	서울민사지법, 진행중
92가단 58883	김종식이 안기부와 서울지검에 의해 2일 간 영장없이 불법체포·구금당한 사건	서울민사지법, 92.10.15 선고, 원고 일부승소
91가단 58693	정재성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안기부 대구지부가 거부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원고 일부승소(확정)

\* 대법원,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1992년 9월 30일 현재)

다음 표의 송기복씨를 포함하여 속칭 '송씨일가 간첩사건' (서중석, 「한국판 25시, 송씨일가 간첩단사건의 전말」, 『신동아』 1988년 8월호, 407~426쪽) 관련자들은 최소 75일, 최대 116일간이나 불법구금된 채 안기부에서 수사받았다. 그들은 그동안 잠 안 재우기, 곤봉·혁대와 구둣발에 의한 구타, 발가벗기고 두드리기, 이른바 '통닭구이', 손톱 밀찌르기, 술과 물먹이기 등 온갖 고문을 받았다. 이들은 1982년 3월 초 불법연행된 지 6개월 만인 9월 10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일간지들은 일제히 1면 톱기사와 박스기사·사설을 "80년대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장식하였다. 이 고정간첩단은 29명이나 되는 큰 규모이고 25년간 암약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으며 학생시위를 선동하여왔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주범들이 전직 공화당 중앙상임위원, 대학교수, 회사중역, 서울시 공무원 등 사회적 신분이 뚜렷하고 유학까지 한 인텔리들로서 이들은 이같은 사회적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군사, 학원 및 국가기관 등에 침투해 조직적인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안기부는 대남공작부서인 북괴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 송창섭이 8차례에 걸쳐 남한에 잠입해 이들의 활동을 직접 현지 지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입북하여 로동당에 입당하고 밀봉교육을 받은 뒤 남파되어 북괴로부터 받은 1억 8천만 원의 공작금으로 위장업체를 설립·운영해왔으며 송창섭은 포섭대상 인물의 자녀들까지 조직에 끌어들인 색다른 특징을 갖고

## 1980년대 간첩사건의 불법구금 사례

성명	연행일자	구속영장발부일자	불법구금기간	구금장소
양희선		1973.9.1	48일	남대문경찰서
조상록		1978.1.25	20일	중앙정보부
신귀영	1980.2.26	1980.5.15	70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서성철	1980.2.28	1980.5.15	70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이성국	1980.9.	1980.12.	89일	서산경찰서
정종희		1980.12.	40일	안기부
나진	1981.3.26	1981.6.22	3개월	서울시경육인동분실
김장길	1981.5.12	1981.6.25	45일	안기부 부산분실
이순희	1982.6.7	1982.6.17	25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송기복	1982.3.2	1982.6.26	116일	안기부
차풍길		1982.8.7	66일	안기부
함주명		1983.2.	60일	안기부
고창표		1984.1.25	56일	안기부
이창국		1984.5.1	77일	안기부
정금란		1984.5.25	30일	제주경찰서
조봉수	1984.8.12	1984.10.19	72일	창원경찰서
성영희		1984.10.16	56일	창원경찰서
황병규	1985.4.25	1985.4.30	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정삼근		1985.7.15	52일	전주보안대
김양기		1986.4.5	60일	광주보안대

\* 민주화실천기족협의회, 1987년 고문추방을 위한 고발접수자료 등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2년 이상을 끄는 재판과정에서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더구나 2심에서는 공소장이 축소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대법원은 두 번에 걸쳐 무죄판결 취지로 최고 사형판결까지 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모두 대법원판결에 어긋나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되돌리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안기부 수사관에 연행되어 1주일간 조사받기도 하였다. 변호인들의

고초를 무릅쓰고 변론활동에도 불구하고 월북 가족을 둔 죄로 이들은 김형기 대법원판사에 의해 세번째 고법판결로 최고 징역 7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29명이나 되는 대규모 간첩단이 25년간이나 고정간첩활동을 했다는 보도내용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은 전두환정권과 안기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 3. 제6차 개정(반공법 흡수통합, 1981~1991.5) 시기

1980년대 특히 그 후반은 국가보안법사건의 항상적 양산으로 가히 '국가보안법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예컨대 이른바 시국사건 구속자가 1986년 6월 19일 현재 978명에서 같은 해 11월 5일에는 2,643명으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 전국대사건 구속자를 제외하면 1,359명이었다. 이들을 적용법규별로 볼 때 국가보안법 461명, 집시법 391명, 폭행 235명, 사문서위조 37명, 기타 235명으로 국가보안법이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1986년도 인권보고서』, 17쪽). 그리고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512명, 집시법으로 기소된

(입건자수 / 구속자수)

	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2,232 1,565	167 116	270 116	234 166	121 108	106 94	127 101	527 365	489 302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8 8		19 5	1 1				17 1	
잠입·탈출	39 29	3 2	7 4	11 6	7 6	2 2	2 2	7 7	
찬양·고무	2,072 1,495	148 110	225 151	201 153	106 96	2 2	2 2	7 7	
화합·통신	9 7	1 1			3 2	2 2	2 1	1 1	
편의 제공	14 3		2	8 1				3 1	
불고지	42 8	13 1	12 1	11 4		2 1	4 1		
무고	12 11	1	2 2		4 3	3 3	1 1		1 1

사람이 3,316명으로 집계된다(『경향신문』 1988년 6월 28일자). 한편 1980년부터 1988년 9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군인의 수는 40명이고 1989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소된 수는 8명이다(국방부 군사법원, 1988~1989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는 한편으로 군사쿠데타세력의 파시스트체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유혈진압하고 들어선 정권의 비정통성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무장과 조직적 체계화에 기인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학문과 사상, 출판 등에 대한 탄압과 대형조직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다음의 죄목별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찬양·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정권 성립기와 정권의 위기국면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내무부,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684쪽;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37쪽 이하. 이 자료의 수치는 검찰연감 및 사법연감의 수치와 차이가 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1980~1987년 사법연감 등에서 발췌하여 만든 표들이다.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기소	국가보안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인원	반공법	136	65	13	-	3	2	5	-
	집시법	3	155	130	183	249	540	1,245	714

\* 반공법 : 1980년 국가보안법에 통폐합

\* 대법원, 1991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440~450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인권의 실상』, 1992, 87쪽

####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국가보안법·반공법 재판인원수

(단위: 명)

연도	19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1990	1991.~92.9
국보	57	175	249	187	152	213	428	613	253	331	534	539
반공	188	113	40	7	5	4	7	-	-	-	-	-
계	245	288	289	194	157	217	435	613	253	331	534	539

\* 법원행정처, 1980~1991년 사법연감 및 대법원,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

####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기징역(금고) 선고 인원수

(단위: 명)

연도	19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전체	42	44	73	47	64	62	65	60	68	60	59	68	90	83	105	104	88	81
국보	4	10	13	8	7	4	3	1	-	2	2	5	7	3	4	5	4	-
반공	-	-	3	2	2	1	-	3	-	3	2	-	1	-	-	1	1	-

#### 제1심 형사공판사건 사형선고 인원수

(단위: 명)

연도	19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전체	37	45	39	24	27	33	32	14	17	18	32	33	35	19	18	25	23	18
국보	7	11	13	2	7	8	5	1	-	1	2	1	6	4	1	1	-	-
반공	-	13	1	2	1	-	-	2	-	2	3	-	-	-	-	-	-	-

#### 1980~1988년 법원의 사형판결 확정사건수의 죄명별, 연도별 추이

	존속살인	살인	강도살인	특가범	국보법	계
1980	2	5	2	1	5	15
1981		2	9	1		12
1982		8	1	1	3	13
1983		3	8	3	4	18
1984	2	4	3			9
1985		6			1	7
1986	1	3	2		3	9
1987		3	3			6
1988		4	3	1		8
합계	5	38	31	7	16	97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한 1980년대 초반 정권성립기와 위기가 가중되는 1986~1987년 정권 말기에 기소자수가 많게 나타난다. 1984년과 1987년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사형·무기·무죄·집행유예 선고율

(단위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사형 선고율	형사전체	0.03	0.03	0.03	0.02	0.02	0.01	0.02	0.01	
	국보법	-	0.10	2.33	3.31	0.82	0.97	0.40	-	-
	반공법	2.14	-	-	-	-	-	-	-	
무기 선고율	형사전체	0.06	0.07	0.08	0.08	0.10	0.10	0.08	0.07	0.06
	국보법	3.92	0.51	3.26	2.48	3.28	4.85	1.62	-	0.43
	반공법	1.43	-	3.03	-	-	50.00	14.29	-	-
무죄 선고율	형사전체	0.49	0.53	0.52	0.51	0.49	0.44	0.40	0.42	0.40
	국보법	-	-	0.93	-	-	5.83	-	-	-
	반공법	-	-	-	-	-	-	-	-	-
집행유예 선고율	형사전체	44.13	41.71	41.16	41.28	40.23	40.38	41.67	44.24	46.40
	국보법	15.69	1.96	19.07	13.22	19.67	21.36	36.03	42.67	70.51
	반공법	26.43	1.86	6.06	-	33.33	-	14.29	-	-

을 비교하면 기소자수가 거의 5배에 이른다. 1984년 7월부터 1987년 6월까지 3년 동안 1,0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어 78.6%가 기소되었으며, 3년 동안 매일 0.7건의 국가보안법사건이 발생하여 0.9명씩 입건된 셈이다(『동아일보』 1988년 6월 3일자;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39쪽).

그러나 국가보안법사건의 양산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하력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이것은 형량의 상대적 경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집행유예율이 형사사건 전체의 그것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7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해에는 70.5%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사형선고율 내지는 무기선고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4. 제7차 개정(1991. 5~현재) 시기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를 포함한 이전 정권의 악정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었던 1988년에는 이 법에 의한 구속자수가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1989년 4월 문의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른바

‘공안정국’이 전개되면서 정국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검찰 공안부 등에 의해 얼어붙었다. 치안본부는 1989년 6월 9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안전력자 53,116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여 좌경조직가담활동 재개 여부를 추적키로 했으며(『동아일보』 1989년 6월 9일자),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6월 27일 「국내좌경실상자료집」에서 좌경세력이 침투한 조직은 전국 12개(학원 2, 노동 1, 출판문화교육 4, 재야 및 종교 5), 지역 114개(학원 20, 노동 30, 출판문화교육 25, 재야 및 종교 39)인데 핵심세력수는 학원 6,500명, 노동 2,200명, 출판문화교육 1,000명, 재야 및 종교 800명 등 10,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안기부에 의한 잠재적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자들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88년 2월부터 1989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안기부에 의해 이미 6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안기부, 1989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동아일보』 1989년 10월 4일자). 다음은 1989년 4월 3일부터 77일간 활동한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사건처리 현황이다(내무부, 1989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1988~1989년 인권백서』;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45~47쪽).

##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사건처리 현황

지역별	죄명별		신병관계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구속	불구속
서울	68	79	92	55
인천		45	34	11
수원	1	53	35	19
춘천		17	17	
대전		5	3	2
청주	12	4	11	5
대구	1	24	19	6
부산		42	26	16
마산		28	36	2
광주		41	26	5
진주	3	8	6	5
제주		2	2	
합계	85	318	302	126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수는 절대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 양심수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에서 집

계한 각 해당시점의 재감구속자 통계이다.

#### 재감구속자 통계

법률	국보법	집시법	화염법	공무방해	폭력행위	노동관계	기타	미확인
1990.6	398(32)	172(14)	252(20)	62(4)	188(15)	392(31)	-	118(9)
1990.11	513(40)	212(16)	240(19)	87(7)	200(15)	170(13)	14(1)	78(6)
1991.6	537(41)	244(19)	148(11)	136(10)	165(13)	268(20)	60(4)	63(5)
1991.11	482(37)	225(17)	95(7)	120(9)	226(17)	205(16)	64(5)	97(7)
1992.5	448(56)	136(17)	69(9)	66(8)	143(18)	156(20)	65(8)	14(2)

\* 적용법률 경합으로 각 법률별 비율합계가 100%를 초과

또한 국가보안법의 무차별 적용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예술인,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았다. 다음은

#### 1991년도에 경찰청이 처리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직업별 분류

교육정도	불취학	국졸	중퇴·졸	고퇴·졸	대재	대퇴·졸	대학원	유학	미상
피의자수	1	6	10	48	171	142	7	1	5
직업	노동	사회단체·무직	농업	공업	상업	교육	종교	예술	변호
피의자수	45	74	1	1	13	5	5	8	1
학생									185
기타									38

\* 경찰청, 『1991년도 범죄분석』 통권 제12호, 1992. 5에서 발췌

#### 1988~1992년도 국가보안법 구속기소자의 신분별 인원수

	학생	근로자	농업	무직	계
1988	57	4		10	71
1989	155	27	2	214	398
1990	202	50	1	183	436
1991	141	21		137	299
1992.1~9	58	25		101	184
합 계	613	127	3	645	1,388

\* 법무부,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경찰청이 1991년도에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391명에 대한 통계와 법무부가 1988~1992년에 구속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직업별 통계이다.

그리고 1990년 6월 11일 현재 전체 구속노동자 총 404명의 적용법률별 구분(장명국 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준비모임,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공청회 자료집』, 1990).

#### 1990년 6월의 구속노동자의 적용법률별 구분

적용법률(조항)	명
업무방해	121
국가보안법	101
폭력행위처벌법	56
제3자 개입금지	26
쟁의조정법	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4
(특수)공무집행방해	20
화염병처벌법	14
방화	4
자살방조	7
주거침입	2
총기탈취	1
공문서, 사문서 위조	11
병역기피	4
법정소란	1
총계	437

\* 경합사건은 중복계산

#### 1990년 12월 마산·창원지역 구속노동자의 적용법률별 구분

적용법률	국보법	집시화염	쟁의조정	형법	기타	합계
노동자	12	2	9	16	3	42(56.0)
노동단체	6	-	2	-	-	8(10.7)
학생	7	11	-	-	2	20(26.7)
기타	3	-	-	-	2	5(6.7)
합계	28(37)	13(17.3)	11(14.7)	16(21.3)	7(9.3)	75(100)

\* ( )안은 %

7. 15쪽)과 1990년 12월 9일 현재 마산·창원지역의 구속자 총 75명의 적용법률별 구분(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부산경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공청회 자료집』, 1991. 2. 9. 15쪽)을 보면 노동자의 탄압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이 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1987~1992),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검찰연감』(1992), 대법원 및 법무부의 1991~1992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한 표이다.

#### 국정감사제출용 국보법·집시법 기소 인원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국가보안법 기소인원	432	104	312	414	358	148
집시법 기소인원	714	506	413	413	369	123

\* 199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여·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죄명별 전체사건 처리인원

		형사법 총계	특별형법 총계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b>총 계</b>		1,563,514(100)	1,255,283(100)	601(100)	1,591(100)
기 소	소 계	822,092(53)	702,578(56)	358(60)	599(38)
	구 속	101,228(6)	61,874(5)	322(54)	321(20)
	불구속	41,294	29,795	36	112
불 기 소	구 약 식	679,570(43)	610,909(49)	-	166(10)
	가정법원 송치	11,188	6,530	5	6
	소 계	730,234	546,175	238	986
기 소	기소유예	159,468(10)	122,033(10)	180(30)	714(45)
	기소중지	122,010	67,638	38	209
	혐의 없음	123,748(8)	53,643(4)	18(3)	47(3)
	죄가 안됨	2,599	1,009	1	1
공소권 없음		322,409(21)	301,852(24)	1(-)	15(1)

\* 대검찰청, 『1992(1991. 1. 1~12. 31) 검찰연감』, 390~411쪽에서 발췌

#### 1,300여 공안관계사법 중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수용현황

(1991. 10. 30 현재)

	계	기결	미결
계	719	347	371
국가보안법	428	240	188
노동관계법	68	8	60
화염병처벌법	116	57	59
집시법	107	43	64

\* 국회사무처, 제15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1991. 11. 8. 69쪽

'법률'에 의해 정치인, 언론인, 경제계 인사들이 남북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던 학생, 재야인사들의 방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이론 혹은 북한관련 출판물을 단순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되는 이중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다음은 대검찰청의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 1988년도(국회사무처, 198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88. 10. 10. 18쪽) 및 1990~1991년도 자료에서 발췌한 통계이다. 여기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북한 및 사회주의 관계 이론서적을 제작·소지한 것 등을 이유로 입건된 비율이 78%나 되는 것을 보면 그 적용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적용조형별 분류

(단위: 명)

	이적표현물	찬양, 고무, 동조	이적단체	간첩	기타
1988.1~8	128	23	18	2	2
1989.9~90.8	418	173	136	9	23
1990.9~91.8	324	128	234	2	36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대단히 경직된다. 제정 이래 1970년대까지는 제1심 전체형사사건 무죄율보다 국가보안법사건의 그것이 항상 높았으나 제6차 개정시기를 거쳐 제7차 개정시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이는 1987~1991년 사법연감과 대법원의 1990~1992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한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 제1심 형사공판 판결 인원수율(%)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1~8
사형	형사전체	0.02	0.01	0.01	0.03	0.02	
선고율	국보법	-	-	0.47	0.19		
무기	형사전체	0.07	0.06	0.06	0.08		
선고율	국보법	-	0.43	-	-		
무죄	형사전체	0.42	0.40	0.38	0.38	0.44	0.46
선고율	국보법	-	-	-	0.26	0.26	
집행유예	형사전체	44.24	46.40	48.05	48.39	49.24	
선고율	국보법	42.67	70.51	56.40	38.01		41.25

		1989			1990			1991			1992.1~8		
(백분율)	형사전체	국보	집시	형사전체	국보	집시	형사전체	국보	집시	형사전체	국보	집시	
영장발부율	91.6	96.7	97.2	91.9	98.4	95.6	92.6	100	97.1	93.6	100	99.3	
적부심석방률	54.5	4.8	21.1	53.1	7.1	20.7	51.0	5.9	30.8	50.8	-	-	
보석허가율	57.4	22.2	28.6	58.4	15.8	38.7	58.3	10.7	33.3	56.0	-	33.3	

\* 대법원, 1990~1992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무기수의 죄명별 수용현황

(1992.10 현재)

합계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인	동 미수	축탁살인	상관살해	사체유기	살인방화
1,058	455	369	25	4	1	8	5	2

존속상해치사	강도	특수강도	강도치사상	강도상해	강도강간	강간치사상	미성년강간
1	12	6	18	6	48	13	1

미성년자약취유인	특가(상습강도)	특가(강도상해)	특가(약취유인)	특가(특수강절도)
1	2	11	3	4

현주건물방화치사상	횡령절도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5	1	51	2	4

\* 법무부, 199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기소되어 수감된 사람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제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의 양심수 혹은 정치범 규정에 부합한다. 특히 이들 중 비전향장기수는 양심수문제의 가장 핵심부분에 서 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에 의하면 1991년 10월 10일 현재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정급수별 누진처우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나이와 복역기간은 다음과 같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155쪽).

## 연령별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수

70세 이상	69~60세	59~60세	49~40세	39~30세	29세 이하	계
6	21	15	3	1	1	48(명)

##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수감기간

40년 이상	39~30년	29~20년	19~10년	9년 이하	계
2	10	23	6	7	48(명)

또한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 즉 인간의 내심을 재단하는 법이라는 본질적 특성과 그 적용의 정치적 고려라는 부수적 특성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의 적용 양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비율(%)

형 법 계	1일	2일	3일	4일	20일	30일	90일	6개월 이내	1년 미만	1년 이상
형 법 계	52.5	8.4	2.6	2.2	8.5	4.4	6.8	3.6	3.7	7.3
특별법계	37.2	6.2	1.5	1.4	7.6	6.9	15.9	9.2	6.6	7.4
국 보 법	12.3	1.3	0.8	0.8	1.9	1.9	7.7	16.5	16.3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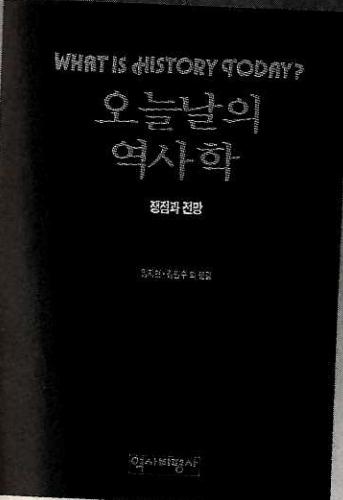
\* 경찰청, 『1991년도 범죄분석』 통권 제12호, 1992. 5에서 발췌

E.H. 카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90년대식 응답!!

# 오늘날의 역사학

## 쟁점과 전망

이제 '오늘날의  
역사학'을  
보십시오.



### 역사학

역사학은 각 시대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치·경제·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잘 무장된 과학적  
방법론이나 정교한 해석틀로도 다양한 성격의  
역사를 하나의 페리디아임으로 묶을 수는 없다.

**이 책은** 점차 '신다원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현대역사학의  
범주를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  
▲경제사 ▲지성사 ▲민중문화사 ▲종교사  
▲과학사 ▲여성사 ▲예술사 ▲유럽사  
▲제3세계사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그것의 연구대상과  
관점, 연구방법론을 듣고 있다.

**우리는** 이들 전문가의 다양한 음색을 그대로 전달받아 현대역사학의 조류를 손쉽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사고의 공유나 폭넓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54쪽, 5,200원

역사비평사

서울 중구 필동 2가 120-1  
전화 (02) 279-0157~0158

## 민주 사회를 위한 변론

책은날 1993년 1월 15일

펴낸날 1993년 1월 31일

지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펴낸이 장두환

펴낸곳 역사비평사

등록번호 제1-669호(1988. 2. 22)

서울 중구 필동2가 120-1

전화 279-0157(영업), 279-0158(편집)

값 6,500원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연구·조사·변론활동 등을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만들어졌다.

민변은 그동안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

최근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나라 법률가단체들과 연대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보호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8 현대오피스텔 404호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